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7”을 “235”로 하고, 일반직 계 “236”을 “234”로 하며, 행정사무관 “86”을 “8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7”을 “235”로 하고, 일반직 계 “236”을 “234”로 하며, 행정사무관 “86”을 “8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12월 30일”을 “2024년 12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7</u>	<u>235</u>	-2
•	•	•	
•	•	•	
일반직 계	<u>236</u>	<u>234</u>	-2
•	•	•	
•	•	•	
행정사무관	<u>86</u>	<u>8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37</u>	<u>235</u>	-2
·	·	·	
·	·	·	
일반직 계	<u>236</u>	<u>234</u>	-2
·	·	·	
·	·	·	
행정사무관	<u>86</u>	<u>8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	·	